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단535705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중소기업은행

피고A

변론 종결2024. 10. 11.

판결 선고2024.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951,097원 및 그중 149,500,977원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57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101,397,67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8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판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하여 2022. 12. 1.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 1000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23. 5. 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7.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채권자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면 그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그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정윤